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5호 2024. 2. 16.(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26호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627호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628호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629호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17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2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32
- 하동군 고시 제2024-2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33
- 하동군 고시 제2024-2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34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247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39
- 하동군 공고 제2024-248호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나팔항) 실시설계수립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부도 의견수렴 공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24-249호 동광 도시재생사업(주거지지원형) 집수리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43

회									
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26 호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선별·저장·유통에 관한 사항
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유통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통센터 위탁운영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대표자)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등록번호 (법인, 단체)			
	주 소			
기 간				
시 설 개 요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시 설 설 비	연 면 적	m ²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m ²		m ²
	주요시설			m ²
	기 타			
위탁 신청동기 (취지)				
<p>「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하 동 군 수 귀 하</p>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27 호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

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628 호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하동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
3.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

라.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마.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바.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10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29 호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포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

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하동군청 및 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교육 등 사무
4.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하동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청구이유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 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	---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번호” 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 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의회 의장 직인</p>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 구 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의회 의장 직인</p>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 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 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 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4 - 24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2. 5.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24-00008
- 허가연월일 : 2024. 2. 5.
-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및 주차장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 851, 1,000㎡
(인근: 화개면 탐리 621-3)
- 점·사용의 기간 : 2024. 2. 5. ~ 2029. 2. 4.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화개약양농업협동조합

하동군 고시 제2024 - 25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2. 5.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24-00009
- 허가연월일 : 2024. 2. 5.
- 점·사용의 목적 : 임시 사무실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횡천면 횡천리 644-4, 643-4, 1019-135 / 51㎡
- 점·사용의 기간 : 2024. 2. 5. ~ 2029. 2. 4.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문화체육과(하동군수)

하동군 고시 제2024-26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 2. .

하 동 군 수

구분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원점	소재지	폐기일	표지재질	비고
	점명	좌표		점명	좌표						
		X	Y		X	Y					
지적도근점	316	184818.28	264451.77	W316	285126.23	264525.53	중부	악양면 정서리 1046 - 13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23	187313.63	264677.24	W323	287621.55	264751.19	중부	악양면 매계리 97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324	187369.30	264722.94	W324	287677.18	264796.87	중부	악양면 매계리 539-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325	187350.08	264637.87	W325	287657.90	264711.81	중부	악양면 매계리 572-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333	184342.91	264135.86	W333	284651.01	264209.67	중부	악양면 입석리 16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340	185394.47	265092.73				중부	악양면 신흥리 734-1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346	185204.96	265814.12	W346	285512.82	265888.11	중부	악양면 신흥리 216-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892	267544.33	283604.49	중부	진교면 양포리 55-3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893	167313. 95	283524. 19	W893	267622. 38	283598. 61	중부	진교면 양포리 99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897	168031. 55	283014. 89	W897	268339. 92	283089. 47	중부	진교면 양포리 175-1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918	169904. 24	278911. 39	W918	270212. 50	278985. 56	중부	진교면 백련리 59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23	167406. 41	283082. 10	W923	267714. 76	283156. 61	중부	진교면 양포리 96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24	167236. 87	283216. 42	W924	267545. 17	283290. 97	중부	진교면 양포리 96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29	166750. 81	283342. 77	W929	267059. 14	283417. 38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0	166703. 39	283316. 12	W930	267011. 73	283390. 74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1	167247. 39	282943. 55	W931	267555. 73	283018. 11	중부	진교면 양포리 97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2	167317. 31	283004. 05	W932	267625. 61	283078. 57	중부	진교면 양포리 96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4	167154. 13	283006. 36	W934	267462. 44	283080. 90	중부	진교면 양포리 99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5	167083. 21	283083. 60	W935	267391. 54	283158. 17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36	167171. 34	283159. 65	W936	267479. 72	283234. 22	중부	진교면 양포리 97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937	267213. 28	283142. 62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939	267194. 56	283266. 10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40	166799. 85	283115. 94	W940	267108. 22	283190. 53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41	166708. 75	283171. 01	W941	267017. 10	283245. 64	중부	진교면 양포리 98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945	170789. 60	283688. 55				중부	진교면 송원리 137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986	170199. 69	281845. 30	W986	270507. 91	281919. 63	중부	진교면 진교리 785-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18	175773. 94	280470. 94	W1018	276082. 15	280544. 43	중부	진교면 월운리 609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023	175949. 77	280265. 87				중부	진교면 월운리 199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026	171671. 41	283194. 49	W1026	271979. 63	283268. 71	중부	진교면 송원리 393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042	171721. 59	283064. 97				중부	진교면 송원리 52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59	165907. 64	282919. 81	W1059	266215. 90	282994. 30	중부	진교면 술상리 258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074	170127. 50	283656. 97				중부	진교면 송원리 1230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083	169992. 46	282395. 67				중부	진교면 진교리 827-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84	170463. 28	279505. 49	W1084	270771. 49	279579. 59	중부	진교면 백련리 산75-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85	170522. 97	279638. 92	W1085	270831. 20	279712. 99	중부	진교면 백련리 산75-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95	170412. 61	281335. 59	W1095	270720. 89	281409. 95	중부	진교면 백련리 69-4	2023-12-31	표석	망실
지적도근점	1096	170391. 12	281414. 00	W1096	270699. 36	281488. 34	중부	진교면 백련리 5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97	170349. 20	281514. 19	W1097	270657. 46	281588. 55	중부	진교면 백련리 1-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098	170941. 95	278302. 72				중부	진교면 백련리 718-2	2023-12-31	표석	망실
지적도근점	1444	186004. 57	282571. 96	W1444	286312. 47	282645. 77	중부	옥종면 대곡리 539-1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46	191557. 47	280371. 68				중부	옥종면 종화리 231-6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49	187039. 09	280305. 85	W1449	287347. 87	280379. 30	중부	옥종면 청룡리 173-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54	187156. 96	278625. 87				중부	옥종면 청룡리 1017-1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57	189746. 27	274556. 01	W1457	290054. 33	274629. 97	중부	옥종면 궁항리 2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471	189090. 95	280521. 37	W1471	289399. 16	280595. 37	중부	옥종면 문암리 22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473	188963. 29	280765. 96	W1473	289271. 38	280839. 98	중부	옥종면 문암리 142-4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80	188392. 47	280845. 69				중부	옥중면 병천리 273-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482	188148. 74	280663. 68	W1482	288456. 78	280737. 66	중부	옥중면 병천리 941-2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490	192725. 61	280538. 19				중부	옥중면 두양리 337-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492	194452. 56	280824. 57	W1492	294761. 15	280898. 68	중부	옥중면 두양리 1075-5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495	193979. 73	280623. 94	W1495	294288. 29	280697. 98	중부	옥중면 두양리 102-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504	190514. 34	280763. 42	W1504	290823. 09	280836. 69	중부	옥중면 문암리 41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506	185123. 52	281078. 81	W1506	285432. 47	281152. 36	중부	옥중면 정수리 59-9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512	185666. 50	281926. 72	W1512	285974. 67	282000. 38	중부	옥중면 대곡리 800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514	186235. 37	283142. 67	W1514	286543. 16	283216. 52	중부	옥중면 대곡리 499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533	184790. 17	283126. 37	W1533	285098. 11	283199. 93	중부	옥중면 북방리 829-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535	184878. 20	282815. 28	W1535	285186. 15	282888. 83	중부	옥중면 대곡리 65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550	187484. 86	280968. 38	W1550	287793. 00	281042. 45	중부	옥중면 병천리 101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551	187681. 29	280713. 55				중부	옥중면 병천리 956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781	167891. 14	281805. 74	W1781	268199. 14	281880. 11	중부	진교면 양포리 81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82	167685. 69	282010. 89	W1782	267993. 69	282085. 29	중부	진교면 양포리 469-1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83	167574. 77	281977. 76	W1783	267882. 81	282052. 14	중부	진교면 양포리 389-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84	167494. 02	281942. 21	W1784	267802. 06	282016. 59	중부	진교면 양포리 산98-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85	167372. 82	281860. 57	W1785	267680. 87	281934. 92	중부	진교면 양포리 389-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86	167322. 14	281866. 16	W1786	267630. 16	281940. 52	중부	진교면 양포리 97-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1795	170339.90	279203.45				중부	진교면 백련리 787-14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1796	170363.82	279123.75				중부	진교면 백련리 78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011	183270.10	261732.45				중부	악양면 평사리 산78-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012	183489.36	261558.84	W2012	283797.41	261632.76	중부	악양면 평사리 1151-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013	183623.71	261425.66				중부	악양면 평사리 산80-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097	190353.26	275533.71				중부	옥종면 위태리 1337-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124	174026.76	282675.84				중부	진교면 고이리 1257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185	183747.06	264389.67	W2185	284055.02	264463.95	중부	악양면 신대리 62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205	173384.33	283168.57				중부	진교면 고이리 산125-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268	188660.08	277257.76	W2268	288968.94	277330.88	중부	옥종면 월흥리 361-6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278	187410.64	275468.55				중부	옥종면 회신리 산88-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279	187315.08	275489.78	W2279	287623.51	275562.87	중부	옥종면 회신리 산88-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329	188724.37	264687.44	W2329	289032.24	264761.10	중부	악양면 등촌리 35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330	188685.03	264741.56	W2330	288992.93	264815.21	중부	악양면 등촌리 35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387	170571.73	278684.17	W2387	270879.93	278758.37	중부	진교면 백련리 79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391	170254.12	279177.37				중부	진교면 백련리 800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526	186694.17	281952.91	W2526	287002.48	282026.97	중부	옥종면 법대리 34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27	186686.71	282195.91				중부	옥종면 법대리 36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29	186386.98	281980.10	W2529	286695.28	282054.12	중부	옥종면 법대리 65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30	188987. 87	280591. 46				중부	옥종면 문암리 157 - 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31	188998. 36	280520. 91				중부	옥종면 문암리 22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32	188952. 56	280489. 92				중부	옥종면 문암리 21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34	188815. 75	280411. 34				중부	옥종면 문암리 산70 - 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544	189117. 17	280357. 97				중부	옥종면 문암리 21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712	169347. 87	279237. 63	W2712	269656. 10	279311. 91	중부	진교면 안심리 370-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806	190353. 05	275533. 99				중부	옥종면 위태리 1337 - 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809	189862. 74	275569. 47				중부	옥종면 위태리 1323 - 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811	189635. 23	275526. 08				중부	옥종면 위태리 산139 - 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813	189355. 24	275584. 07				중부	옥종면 위태리 산149 - 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825	188614. 08	276010. 03				중부	옥종면 위태리 1602 - 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2830	188413. 90	276390. 86				중부	옥종면 위태리 1621 - 4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835	174418. 76	280360. 03	W2835	274727. 09	280434. 02	중부	진교면 월운리 765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2880	189775. 12	272818. 92	W2880	290083. 33	272892. 83	중부	옥종면 궁항리 1124-4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18	181504. 38	263464. 71				중부	악양면 미점리 산88-1	2023-12-31	목재	망실
지적도근점	3120	181500. 58	263554. 04				중부	악양면 미점리 산86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22	181502. 79	263631. 20	W3122	281811. 06	263705. 22	중부	악양면 미점리 571-3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23	181480. 47	263685. 11	W3123	281788. 73	263759. 13	중부	악양면 미점리 571-3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24	181477. 74	263724. 48	W3124	281785. 96	263798. 47	중부	악양면 미점리 572-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26	181334. 40	264105. 32	W3126	281642. 70	264179. 34	중부	악양면 미점리 704-2	2023-12-31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3128	185899. 44	263064. 77	W3128	286207. 08	263138. 20	중부	악양면 정서리 642-8	2023-12-31	플라스틱	망실
지적도근점				W3438	287466. 15	279507. 49	중부	옥종면 청룡리 718-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467	284931. 74	280947. 26	중부	옥종면 정수리 65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674	275906. 36	280521. 87	중부	진교면 월운리 61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675	275813. 97	280353. 01	중부	진교면 월운리 6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677	276015. 90	279855. 96	중부	진교면 월운리 55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700	268115. 50	282275. 17	중부	진교면 양포리 80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3710	266880. 36	282969. 80	중부	진교면 솔상리 469-13	2023-12-31	맨홀식	망실
지적도근점				W4045	290961. 33	272109. 79	중부	옥종면 궁항리 850-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4247	288235. 30	279848. 07	중부	옥종면 병천리 897-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4265	288878. 81	279028. 06	중부	옥종면 월횡리 54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4697	290650. 72	279987. 25	중부	옥종면 안계리 27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55	185527. 18	263574. 86	W5555	285834. 83	263648. 23	중부	악양면 정서리 107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66	185313. 17	264410. 84	W5566	285621. 25	264484. 57	중부	악양면 정서리 23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67	185253. 09	264411. 19	W5567	285561. 16	264484. 93	중부	악양면 정서리 1059-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73	185203. 97	264644. 69	W5573	285512. 05	264718. 41	중부	악양면 정서리 1046-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74	185071. 19	264646. 25	W5574	285379. 27	264719. 97	중부	악양면 정서리 261-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91	184176. 14	264843. 11	W5591	284484. 14	264917. 34	중부	악양면 신성리 1298-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92	184192.01	264785.76	W5592	284500.05	264859.99	중부	악양면 신성리 1018-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595	185151.31	263839.67	W5595	275542.04	271571.44	중부	악양면 정서리 117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43	171744.20	283550.44	W5743	272052.47	283624.69	중부	진교면 송원리 2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50	171595.47	283539.95	W5750	271903.74	283614.21	중부	진교면 송원리 205-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52	171621.08	283423.76	W5752	271929.35	283498.02	중부	진교면 송원리 485-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53	171624.43	283360.93	W5753	271932.69	283435.19	중부	진교면 송원리 476-1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59	171718.58	283335.75	W5759	272026.85	283410.01	중부	진교면 송원리 419-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60	171704.08	283355.31	W5760	272012.35	283429.57	중부	진교면 송원리 460-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72	171507.54	283222.84	W5772	271815.80	283297.10	중부	진교면 송원리 484-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73	171548.24	283337.58	W5773	271856.51	283411.85	중부	진교면 송원리 485-14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776	171446.58	283403.48	W5776	271754.85	283477.74	중부	진교면 송원리 858-2	2023-12-31	플라스틱	망실
지적도근점	5777	171307.59	283299.73	W5777	271615.86	283374.00	중부	진교면 송원리 858-2	2023-12-31	플라스틱	망실
지적도근점	5802	183975.01	260906.64	W5802	284283.03	260980.67	중부	악양면 평사리 1180-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853	187358.81	281038.97	W5853	287667.07	281112.86	중부	옥종면 병천리 89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863	170354.19	281161.75	W5863	270662.55	281235.90	중부	진교면 백련리 765-17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5910	183365.94	265689.78	W5910	283674.02	265763.81	중부	악양면 신성리 360-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037	172782.75	281127.68	W6037	273091.09	281021.79	중부	진교면 관곡리 159-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038	172900.53	281165.22	W6038	273208.87	281239.33	중부	진교면 관곡리 산30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040	173070.29	281005.96	W6040	273378.63	281080.07	중부	진교면 관곡리 469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041	173269.04	280931.04	W6041	273577.37	281005.14	중부	진교면 관곡리 688-3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044	173698.69	280800.97	W6044	274007.02	280845.05	중부	진교면 관곡리 66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6181	171135.58	282580.75	W6181	271443.85	282654.95	중부	진교면 송원리 617-3	2023-12-31	플라스틱	망실
지적도근점				W6250	289157.83	280419.79	중부	옥중면 문암리 216-2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56	289175.43	280704.90	중부	옥중면 문암리 168-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68	289214.99	280819.58	중부	옥중면 문암리 145-3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72	289236.53	280699.17	중부	옥중면 문암리 518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75	291354.12	280743.97	중부	옥중면 문암리 498-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93	290981.12	280549.31	중부	옥중면 문암리 376-3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294	290965.27	280557.97	중부	옥중면 문암리 464-2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310	290905.83	280661.44	중부	옥중면 문암리 40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311	290923.36	280622.01	중부	옥중면 문암리 373-7	2023-12-31	맨홀식	망실
지적도근점				W6330	288069.35	280487.63	중부	옥중면 병천리 10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31	288095.29	280518.14	중부	옥중면 병천리 101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32	288108.07	280580.45	중부	옥중면 병천리 97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35	288190.61	280588.00	중부	옥중면 병천리 97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38	288139.40	280496.01	중부	옥중면 병천리 582-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39	288124.97	280443.73	중부	옥중면 병천리 585-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44	288135.14	280554.09	중부	옥중면 병천리 578-2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48	288859. 30	280904. 23	중부	옥중면 병천리 225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51	288778. 30	280868. 94	중부	옥중면 병천리 228-8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52	288727. 18	280846. 91	중부	옥중면 병천리 286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53	288680. 38	280814. 75	중부	옥중면 병천리 971-1	2023-12-31	철재	망실
지적도근점				W6354	288660. 12	280797. 17	중부	옥중면 병천리 286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381	285069. 12	263566. 56	중부	악양면 입석리 553-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434	273112. 60	284204. 94	중부	진교면 고이리 1232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440	273189. 62	284108. 92	중부	진교면 고이리 1227-1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6441	273262. 30	284142. 31	중부	진교면 고이리 1227-11	2023-12-31		망실
지적도근점				W10221	290219. 04	257399. 78	중부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2-05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W10222	290220. 01	257339. 02	중부	화개면 삼신리 산147	2024-02-05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W10223	290128. 88	257306. 35	중부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2-05	기타	망실
지적도근점				W10224	290065. 15	257292. 78	중부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2-05	기타	망실

하동군 공고 제 2024-247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나. 명 칭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악양면 미점 ~ 신성리 일원
나. 면 적 : 362,633m²
다. 규 모 :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4월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4. 02. 13. ~ 2024. 02. 27.(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담당(055-880-2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 끝.

하동군 공고 제 2024- 248호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나팔항) 실시설계 수립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21호, 2023.12.28.)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나팔항) 실시설계 수립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3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4.02.13.~2023.02.19.)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
나. 이메일 : shj3075@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055-880-24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별첨)
3. 업무중복도 의견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나팔항) 실시설계 수립용역

대상자					의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
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2024. . .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4-249호

도시재생사업(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하동군에서는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사업(주거지지원형)으로 대상지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수리 업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내 집수리 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동광마을 도시재생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 사업대상지 :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일원(동광·중동·서동마을)
- 사업대상 : 해당지역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신청자(50호)
- 사업기간 : 선정 시 ~ 2024. 12. 31.
- 사업예산 : 5억원(신청자 자부담10%)

2. 사업 세부사항

- 집수리 가구 : 총 50가구
 - 집수리 신청자와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민간보조방식으로 진행
- 집수리 범위 : 주택 외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

구분	지원 범위	
단독주택	지붕	단열, 방수, 지붕 마감
	외벽	도장 등 외부 노출 부위로 한정
	옥외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 계단 *마당은 담장 철거 및 낮추기, 녹화, 포장 지원
공동주택	개별세대	창호 및 난간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은 지원불가

- 주택 종류별 집수리 공사 금액
 - 최대 1,000만 이내/가구당(자부담 10% 포함)

※ 집수리 공사 금액은 가구별로 상이함

※ 집수리 사업자는 총 공사비의 10%를 착공 전 신청자로부터 수납받고, 나머지 90%는 준공 후 군에서 지급함.

3. 신청자격

○ (대상) 하동군 소재 소규모 집수리 시공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일 기준 집수리 시공을 수행 중인 업체(업태가 ‘건설업’ 또는 ‘건설’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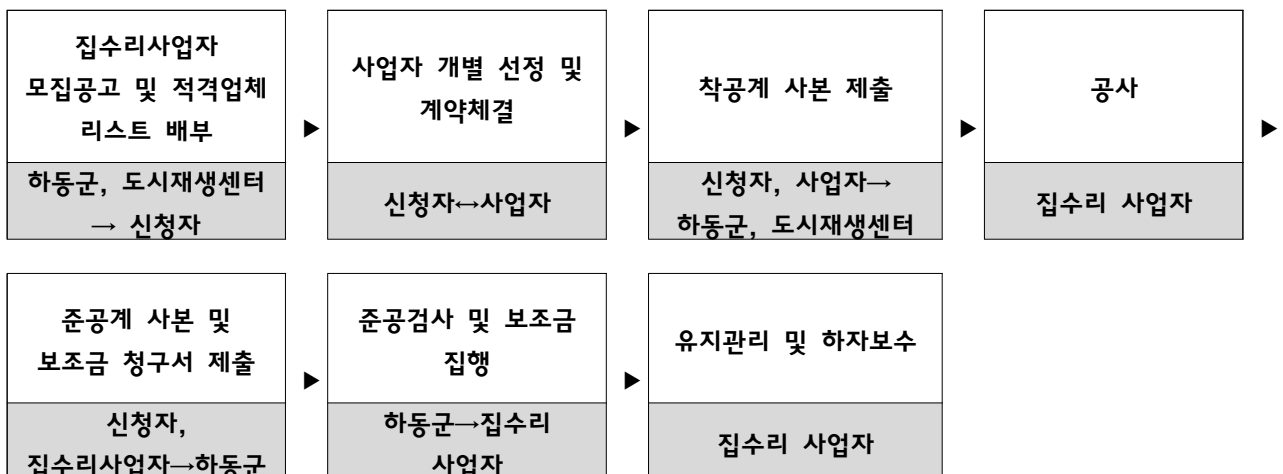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4. 02. 14.(수) 09시 ~ 2024. 02. 28.(수) 18시

○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하동군청 도시과 도시재생계(☎055-880-2140)

5. 사업절차



6. 구비서류

- 집수리 사업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또는 단체) 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15일 이내 발급)
- 사업자 등록증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또는 사무실 내/외부 운영 사진(각 1컷이상)
- 참여인력현황(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 관련 사업 실적(최근 3년)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7. 유의사항

- 집수리 신청자가 사업자 리스트를 참고하여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함

*[붙임7] 참조

- 집수리 과정에서 전적 등 설계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서류접수는 지정 일시 내에만 가능하며, 응모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에 참가할 수 없음(서류 탈락자 유선 통보)
-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2개 업체 미만으로 모집될 경우 재공고하거나, 민간보조 방식에서 현물보조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민간보조) 신청자가 직접 선정·계약, (현물보조) 지자체가 일괄 선정·계약

- 신청자와 설계 및 집수리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집수리 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계좌는 업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다수의 신청자와 계약할 경우 구분이 가능하도록 입금자명을 관리하고, 집수리 외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용이 금지됨

- 자부담 수납 후 착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집수리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검토(취소 등) 하여야 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2024년 2 월 14일

하 동 군 수

붙임4

법인(단체) 일반 현황

법 인(단 체)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설립일	직원수	명(사업전담 00명)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홈페이지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연 혁			
주요실적	- - - - - -		

붙임5

참여인력현황

참 여 인 력 현 황

(자원봉사자 제외)

1.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자격증
책임자				00년 00개월	
실무자					
실무자					
보조원 (회계)					
보조원 (행정)					

- 구분란에는 책임자, 실무자, 보조원(회계/행정)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자격증빙서류 첨부(자격증사본 또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붙임6

관련사업실적(최근3년)

※ 공사건수가 아닌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관 련 사 업 실 적(최근 3년)

연도	사업기간	사업명	발주기관	집행액(천원)	주요내용 및 실적
2023	1/20 ~ 6/30	00집수리	00공사	00,000	○사업내용 : ○공사실적 :
2022					
2021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본 사업과 유사한 집수리사업만 기재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도급인"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 ① 이 계약은 계약일반조건 및 제2항의 견적서가 첨부된 계약서에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상호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공종별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할 재료 품질과 규격은 견적서와 일치해야 한다.
- ③ 이 계약은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견적서로 구성되며 각 계약문서들은 당사자가 상호 교부한 도면 및 공사계획서(구체적인 시공방법, 재료 등) 등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사감독)

-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예, 집수리 점검단)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공사감독의 감독 및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대리인의 배치)

- ① "을"은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공사 작업의 수행 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변경 및 조정)

- ① "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하고, 변경계약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생 또는 안전 사고의 우려 등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 하여 설계변경을 합의하여야 한다.
- ③ 대금지급지체, 설계변경 요구 등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공사완료 후 추가공사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또는 "갑"의 공사감독)은 통지를 받은 후 "을"의 입회하에 합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

-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아래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 4. 국채 또는 지방채
- ② "을"은 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을"이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④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별지>의 하자보증이행각서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이행지체)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이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상금(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

한 경우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 해제)

① "갑"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준공 기한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따라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분쟁해결)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